

데 이 콤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박원순변호사

수신 : FAX/8225229994(박원순변호사)
 송신 : KKR/DACOMHS/CHOLLIAN/J1116
 송신 시각 : 94/07/20 11:23
 수신 시각 : 94/07/20 12:27
 메시지 ID : 6688135231
 제목 : 무라야마일수상방향을 앞둔 우리의 입장

송신자 : J1116 (윤미향)

일본은 아시아교류기금안 백지철회하고 PCA로 가서 국제법으로 심판받자!
 기자회견
 무라야마 일본수상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일시 : 1994년 7월 20일(수) 오전 9시
 ※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소회의실
 ※ 주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 회 : 이미경 홍보위원장

1. 기자회견 개회동기 및 부락하는 말 - 사회자
 2. 우리의 입장낭독 - 이요재 공동대표
 3. 할미나 발언 - 강덕경, 김순덕
 4. 국제중재재판소(PCA) 경과보고 - 지은희 기획위원장(PCA준비위원장)
 5. 앞으로의 강대협 인정실태 - 권희순 총무
- 7월 20일, 오후 12시, 일본대사관 앞 서위(재 127차 수요서위)
 [일본의 아시아교류기금안 백지철회요구 서위]
 오후 2시, 청와대 앞 집회
 (김영삼 대통령께 우리의 입장 전달)
 강대협, 태평양유족회, 장천대할미나들과 함께
 7월 23일, 시간미정, 장소 : 무라야마 수상의 숙소앞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아시아교류기금
 백지철회요구 및 반력책임 이행 요구 서위
 무라야마수상 면담요구
 (면담요청서 7월 19일 보냄)

무라야마 일본수상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의 [아시아교류기금]을 즉각 백지철회하라.

일본정부는 지난 50여 년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하지 않은채 그들의 범죄를 은폐, 축소조작하기에만 급급해 왔다. 그런데 만재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일본정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보다는 오히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보상을 매듭짓는 방안으로 '아시아교류센터'를 설치한 것만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도에 반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일 것이다.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없이 어떻게 새로운 미래관계가 정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방안을 보상을 매듭짓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할 수 있는지 일본정부에게 묻고 싶다.

일본정부는 [아시아교류센터 설치] 방안을 즉각 백지철회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전상규명과 사죄, 개인배상, 책임자처벌 등 법적 책임을 이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역사적인 죄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아시아국들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2. 일본정부는 국제중재재판소(PCA)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에 응하라.

금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 연례형노에게 실무회의는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의 정당성은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각국과의 신안문에서는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범죄의 희생에 대한 조직적 강간 범죄자를 비난하고, 그것에 대한 범죄자 처벌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응해야 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과거 전쟁범죄국이었던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쟁범죄자들을 색출,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위적대의 범죄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군'위안부'제도의 피해자에게 개인배상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과거의 죄과를 씻기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책임자 처벌과 개인배상을 통해서 범죄 책임을 이행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개인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국제중재재판소(PCA)로 가서 심판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3. 한국정부는 일본의 [아시아교류선택기금]안에 대한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상규명과 개인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라.

한국정부는 지난 3.13 일본정부에게 "명확한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면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견한 자세를 보일 경우, 일본이 느끼는 도의적 책임이 오히려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취지하에 응징적 보상요구 불가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한국정부의 진상규명요구는 의례적 절차에 불과했다. 일본정부는 2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3차 보고서를 낼 계획도 없고, 사실규명에 대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피해 일본정부는 [아시아교류선택기금]안으로 보상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공표하였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본회가 [아시아교류선택기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묻는 질의에 대해 외무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 정부의 후속조치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주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정부는 일측의 조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일]이라고 공식답변해 왔다. 피해자의 정부기관으로서 어떻게 가해자인 일본정부에게 지주적인 문제해결을 맡길 수 있는지 우리는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 일측의 조치에 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시아교류기금안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이 축소, 은폐되도록 묵인하는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역사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비주권적인 태도를 즉각 버리고,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지난 8월, 일본정부의 2차 조사보고서 발표이후 한국정부가 박한대로 민간차원에서 피해정규운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과거 65년 한일교류기 동안 공유되어온 역사를 되돌아하지 않는 길이며, 미래역사의 발전을 위한 한국정부의 의무라고 본다.

1994 년 7 월 28 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국제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란 무엇인가?

1. 국제중재재판소는 1899년 제 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의하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창설되었다. 본적 근거는 1899년 7월과 1907년 10월에 있었던 국제중재재판규칙조약이다. 국제중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있다. 이 궁전은 중재재판소를 위해 세워졌으며 이 안에 재판소 국제사무국과 법정이 있다. 중재판소는 동조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기구의 행정관리하에 있다. 또한 제 1차 대전후에 같은 건물내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1922-1946)가 들어섰다가 제 2차 대전후 국제사법재판소로 되었다.

2.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원래 국제중재재판소는 국가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의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35년(중국대 미국하디오협회사건)에 이용된 사례가 있었다. 1962년에는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 규칙"이 제정되어 일반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처리된 사건수는 4868건에 달한다. 또한 1993년 7월에 "국가와 개인간의 선택규칙"이 제정되어 수속은 이 규칙에 따른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와 국제중재재판소 소송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 규칙에 따라서 중재판소에 의한 판결을 받게 된다.

3. 제소기간은?
합의한 바르개 공날 수 있으며 1년 내에도 해결될 수 있다. 1심 본이더 판결은 이것으로 종결된다.

4. 비용은?
재판관, 법정부국 등의 재비용을 쌍방이 예납하는데, 사정에 따라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한쪽이 예납하므로 시작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해 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5. 수속절차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적 규칙에 따른다.

6. 재판관 선임은?
재판관 리스트 중에서 쌍방이 일정한수의 재판관을 선택하며 동시에 동등판소에서 재판관을 선임하고 그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7. 법정의 장소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소 내의 소법정을 사용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8. 준거법 및 구속력은?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다.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9.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대표적 판례

1) *Jarvis case*

멕시코의 재판에서 미국인이 멕시코인으로 부터 손해당했지만 멕시코 당국을 피할 수 없게 하여지고, 그 산인법을 놓았다. 미국정부는 피해가 유출된 후 멕시코 당국이 법안을 제포도 안하고 처벌도 안한 것에 대해 멕시코에 국적이 있다고 해서 일반정부 위안죄에 호소했다. 재판소는 살인이 라고 하는 사실의 정위는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백히 합의 동시에 이것과는 별개로 범인의 불체포, 불처벌에 대한 국가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멕시코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 *Mrs. 그리엄스 case*

미국의 사업가 Mr. Grimes가 아칸에서 사업을 하는중에 아칸인에 의해 살해당했을. Mrs. Grimes는 이 사건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 처음에는 이 사건은 형사문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음. 그러나 다시 심의한 결과 Mrs. Grimes는 남편의 살해때문에 받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권이 있다는 판결로 승소할 케이스다.

2. 피해자와 정대협이 FCA로 가는 이유

1. 일본정부는 아직도 법적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하에서 온 세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2.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말하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타협안도 내놓을 수 없다. 일본정부는 최근 "아시안 교류센터" 등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하에서 개인배상청구권에 대

한 확인

3. 현재 일본법정의 민사소송은 장시간을 요할 뿐 아니라 일본의 국내법 체계상 승소 가능성이 많지 않다. 지난 1년여간 할머니들이 5명이 사망하였다. 조기해결이 큰 목적이며 중재재판소의 제소는 승소확률이 높다.
4. 이미 유엔의 현대노예제부에서 일본정부와 할머니들에게 중재재판소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추천이 있었다.
5. 65년 한일협정속에 형사적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과 개인배상청구권 문제가 들어 있지 않다.

3. 진행과정

1. 지금 단계의 한국변호인단은 이태영, 유현식(변협 전주배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박원순, 배금자, 안상운이며, 일본변호인단은 애즈로 도즈카(Etsuro Totsuka)외에 6명이다. 앞으로 변호인단을 1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2. 다음의 할머니들로부터 위임받을 강덕경, 김순덕, 이영숙, 손판임, 박옥련, 이용수, 김분신, 문필자, 김복동, 김은래, 문옥주 등

* 무라야마 수상방향을 앞둔 정대협의 일정

- 7월 28일, 오후 12시, 일본대사관 앞 시위(제 127차 수요시위)
[일본의 아시아교류기금인 백지철회 요구 시위]
오후 2시, 청와대 앞 집회(김영삼 대통령께 우리의 입장 전달)
정대협, 태평양유족회,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
7월 28일, 시간미정, 장소 : 무라야마 수상의 숙소앞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아시아교류기금 백지철회 요구 및 법적책임 이행 요구 시위
무라야마수상 편답요구(편답요청서, 7월 19일 보냄)

* 앞으로의 정대협의 행사계획

1. 반종족관(Permanent People's Court)추진중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책임을 이행하고, 책임 지어내야 하는 국제적으로 인권문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사들(예, Jack Jackson, 제퍼 카터)을 재판관으로 해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미국에서 버겐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민중 재판을 한 후 국제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PCA)처럼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지만, 국제적으로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후처리 인는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반대운동을 모든 유엔가입국 의무부담안으로 보내고, 국제 민간단체(NGO)들에도 보낼 예정
3. 95년 대이징 세계여성대회를 겨냥하여 온세계인과 큰 프로그램을 만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준비를 위해 10월, 일본에서 정신대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다.
4. 유럽공동체(EC) 여성위원들이(보스니아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과 연대해서 함께 운동을 펼것이다.
5. 지난 5월말 중국무한에 생존해 계신 한국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을 찾아냈다. 실제로 32명이 생존하셨는데, 대부분이 사망하여 9명만 남았다. 이 분들은 일본이 전쟁이 끝난후 일본군이 할머니들을 전쟁터에 그대로 버려두고 온 전형적인 예이다. 그 분들의 증언장이 8월초에 출간될 것이다.
6. 전상규명위원회에서 11월중에 일본식민지 지배정책에 관한 아시아지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할 것이다.
7. 해방5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과 전쟁사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